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년월일 : 2026. 10. 1.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원회 기능 및 위임된 위탁기간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 기능 조항 삭제 (안 제4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탁기간 범위 현행화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별첨)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 제1호다목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나. 예산조치: 별도비용 없음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성별영향평가(여성보육과)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2) 입법예고: 2026. 8. 27. ~ 9. 16. (20일간)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 이상 5년 이내”를 “5년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기능) 1. ~ 4. (생략)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기능)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14조(위탁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제14조(위탁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5년 미만 ---------- 1. ~ 2. (현행과 같음)

붙임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2024. 7. 9.>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1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에 관한 사항

3의2. 삭제 <2015. 9. 15.>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2024. 6. 25.>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6. 3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개정 2025. 11. 24.>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이유) 규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별도의 예산의 증·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 작성자 : 주　무　관　행정7급　박슬빈
- 검토자 : 공공보육팀장　행정6급　윤정현
- 결재자 : 여성보육과장　행정5급　양선희